

# 2021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요강

## 1. 사업목적

-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영화문화 다양성 증진
- 국내 영상 제작환경의 다변화, 활성화 도모

## 2. 지원내용 및 규모

- ※ 각 부문에 해당작이 없거나 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 통합하여 지원가능
- ※ 선정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자부담률 제한 없음(순제작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 추가펀딩 가능하나 전년도 매출 점유율 1% 이상인 투자배급사의 투자유치 시 보조금 반환 (매출 점유율은 2020년 한국영화산업결산의 배급사별 전체영화 매출 점유율 기준)

### (1) 극영화 장편 부문

구 분	일반부문		신인부문	
지원대상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실사 극장편(60분 이상) 독립·예술영화 ※촬영이 개시되었거나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촬영예정인 작품은 제외			
편당 지원금액	최대 4억원 이내 차등 지급			
지원자격	연출자 개인	장편 또는 단편 영화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개인	연출자 개인	장편 연출경력이 없고 1편 이상의 단편 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개인
	제작사	영화 연출경력(장편 또는 단편)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제작사	상기 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지원총액	59.45억원			

### (2) 극영화 단편 부문

구 분	극영화 단편 부문	
지원대상	순제작비 5천만원 미만의 실사 극단편(60분 미만) 영화 ※촬영이 개시되었거나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촬영예정인 작품은 제외	
편당 지원금액	최대 2천만원 이내 차등 지급	
지원자격	연출자 개인	영화 연출경력(장편 또는 단편)이 있거나 영화크레딧 2편 이상인 연출자 개인
	제작사	상기 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지원총액	5.09억원	

### (3) 다큐멘터리 부문

구 분	일반부문		신인부문	
지원대상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실사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이 진행된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잔여 작업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편당 지원금액	장편 : 최대 1.5억원 이내 차등지급 단편 : 최대 2천만원 이내 차등지급			
지원자격	연출자 개인	장편 또는 단편 영화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개인	연출자 개인	장편 연출경력이 없고 1편 이상의 단편 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개인
	제작사	상기 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제작사	상기 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지원총액	11.88억원			

### 3. 지원조건

#### (1) 자격요건

##### □ 연출자 개인 자격요건

- 연출자 자격요건 증빙을 위한 연출작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 신청인이 제작사인 경우에도 연출자 포트폴리오 제출
  - 장편/다큐멘터리 일반부문은 영화 연출경력(장편 또는 단편), 신인부문은 단편 연출경력 증빙 필수
  - 단편부문 영화 연출경력(장편 또는 단편) 있는 경우 증빙 필수, 없는 경우 위원회 제공 제작계획서 양식 통해 참여 크레딧 2편 증빙 필수
- 장편부문 일반부문에 연출자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연출자 개인은 약정체결일까지 제작사를 섭외하여야 하며, 약정은 제작사와 함께 공동 약정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출자 개인은 재외동포도 포함.
  -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자로 외국인 거소증 혹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통해 증빙(제작계획서 상 첨부 필수)

##### □ 제작사 자격요건

- 제작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영화제작업 신고를 필한 자 지칭
- 제작계획서에 영화제작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 □ 원작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시 원작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제출

#### (2) 사업진행

##### □ 사업기간

- 장편 부문 : 약정체결일로부터 18개월 / 연 2회 공모
- 단편 부문 : 약정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연 2회 공모
- 다큐멘터리 부문 : 약정체결일로부터 장편은 18개월, 단편은 12개월(연 2회 공모)

##### □ 보조금 지급조건

- 공통 사항
  - 보조사업자는 약정체결일로부터 장편(극영화/다큐)은 18개월, 단편(극영화/다큐)은 12개월 이내에 제작 완성하여야 함.
  - 다음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편(극영화/다큐)은 최장 6개월, 단편(극영화/다큐)은 3개월 이내에서 사업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단,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별로 연장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약정체결 및 제작착수에 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
    - 촬영 및 후반작업 진행 등 작업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 보조사업자는 매월 보조금 집행내역, 제작 진행 상황, 향후 일정 및 기타 보고사항 등이 포함된 월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장편 부문
  - 약정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본 촬영을 시작하여야 함. 단, 본 촬영 시작 시에는 시나리오 최종고, 촬영 일정, 스태프·배우 명단 및 계약서 및 투자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작착수 통보하여야 함.
- 단편 부문
  -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촬영을 시작하여야 함. 단, 본 촬영 시작 시에는 시나리오 최종고, 촬영 일정, 스태프·배우 명단 및 계약서 및 투자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작착수 통보하여야 함.
- 다큐멘터리 부문
  - 약정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본 촬영을 시작하여야 함(단편은 6개월). 단, 본 촬영 시작 시에는 최종 트리트먼트, 촬영 계획서, 촬영 일정, 스태프 계약서, 주요 출연자 촬영동의서, 투자계약서(선택) 등을 첨부하여 제작착수 통보하여야 함.
  - 이미 촬영이 진행된 경우, 약정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작진행 보고를 통보하여야 함.

### (3)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 □ 보조금 교부절차 및 방법

-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약정 체결, e나라도움 등록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함.
- 본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 본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단,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 보조금 집행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 본 보조금은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가능함.(세부 용도 하기 '보조금 사용용도' 참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보조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으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하더라도 재이월(3회계연도 이월)은 할 수 없음.

□ 보조금 사용용도

- 영화 순제작비

사전제작(Pre-production)	테스트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등 사전제작비, 개발진행비 등
제작(Production)	스태프 인건비,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 촬영관련 비용, 촬영/녹음/조명 등 기자재비용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후반제작(Post-production)	편집, 녹음, DI, 음향, 자막 등

- 스태프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임금 준수 의무
  - ※ 시급(1시간 기준) : 2020년 8,590원 / 월급(209시간 기준) : 1,795,310원
- 인건비 의무사용비율(보조금액의 20% 이상) 준수 의무 및 70% 이내로 인건비 집행
- 식대 및 부식비 30% 이내로 집행 준수
- 직접 제작비 외에 기자재(카메라 등)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및 식대 등의 사무실 운영비), 수리비용 등은 집행 불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대상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세부집행내역서, 증빙자료, 회계검증보고서, 결과 영상물 등
  -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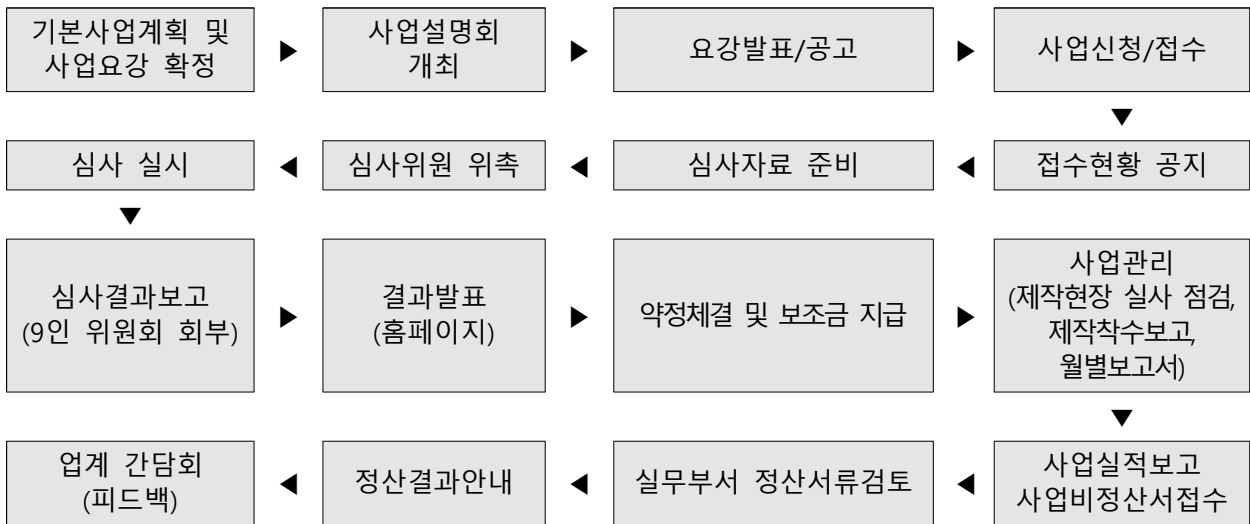
※ 지원대상자는 정산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의 집행·수입 내역을 회계법인(또는 개인 회계사)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해야 함(장편부문 해당)

○ 상환 기간 내 지원받은 보조금액을 자진하여 상환한 경우 권리/의무관계 자동 소멸

□ 정보공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함.

#### 4. 지원절차



#### 5.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 및 최종선정

○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작품을 평가하여 대상 후보 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9인 위원회에 회부

□ 선정기준

○ (공통) 작품완성도, 소재 및 구성의 참신성, 제작계획서 및 제작비명세서의 충실도 및 타당성, 포트폴리오 평가, 면접심사

※ 다큐멘터리는 시나리오 대신 트리트먼트를 평가함.

※ 성평등 지수 가산점 최대 5점 부여(서류심사의 면접심사 회부작 결정 평가 시 적용)

극영화(장/단편 부문)				다큐멘터리		
여성감독	여성프로듀서	여성작가	제1여주인공	여성감독	여성프로듀서	여성서사
1	1	1	2	2	2	1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 단체가 해당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에 의거, 동 사업 심사 시 우대할 수 있음.

## 6.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사)의 작품
- 동일 신청자(사)에 의해 2편 이상 동일 부문 신청 시 신청작품 전체 제외(1인(사) 당 1편 가능)  
(예시) 홍길동 필름에서 장편 시나리오 A와 장편 시나리오 B를 장편 부문에 모두 지원할 경우 두 작품 모두 신청 접수에서 제외됨.
- 동일 신청사(자)가 서로 다른 부문에 한 작품씩 신청은 가능하나, 먼저 선정된 작품으로 사업 수행해야 함.(중복선정 불가)  
(예시) 홍길동 필름에서 장편 시나리오 C와 단편 시나리오 D를 각각 장편 부문, 단편 부문에 신청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두 작품 중 먼저 선정된 작품을 수행해야 함.(중복선정 X)
-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지역영화 제작지원사업) 진행 중인 지원대상자(감독, 제작사) 및 지원 작품
  - ※ 사업결과물·정산자료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검토 및 반환금액 상환까지 이상 없이 완료하여 사업종료통보 받은 이후 신청 가능
- 기획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은 제작지원사업에 신청 불가(정산 완료 후 신청 가능)
- 위원회 여타 제작지원비 보조사업(지역영화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사업에서 제작지원 받은 작품일 경우 신청 불가  
하나 지자체(자체자금일 경우),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작품인 경우 지원 가능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대표), 배급사(대표), 감독, 개인은 신청 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배급사(대표자), 감독, 개인은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영화)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동 지원사업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 ※ 지원 대상 작품으로 확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
- 온라인 접수 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제작계획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
-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7.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1) 접수기간

#### ○ 장편 부문

- 상반기 : 2021.1.4.(월) ~ 1.18.(월) 18:00까지, 15일간
- 하반기 : 2021.6.2.(수) ~ 6.16.(수) 18:00까지, 15일간

#### ○ 단편 부문

- 상반기 : 2021.1.11.(월) ~ 1.25.(월) 18:00까지, 15일간
- 하반기 : 2021.6.9.(수) ~ 6.23.(수) 18:00까지, 15일간

#### ○ 다큐 부문

- 상반기 : 2021.1.20.(수) ~ 2.3.(수) 18:00까지, 15일간
- 하반기 : 2021.6.24.(목) ~ 7.8.(목) 18:00까지, 15일간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http://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 접수 마감일 18:00시에 접수창 자동 종료

□ 제출서류 목록 (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 다운로드 후 작성)

#### 1. 사업신청서

- 위원회 제공양식을 활용하여 신청서 작성 후 PDF로 제출
- 날인 부분 전자서명 이미지 파일로 넣거나 서명 후 PDF로 스캔하여 제출 가능
-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 스캔한 파일 업로드 지양(작성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
- 신청내역 란의 순제작비, 조달확정금액, 지원신청 금액은 제작계획서, 예산서와 동일하여야 함

#### 2. 영화제작계획서 1부(위원회 제공양식 준수, PDF 형태로 업로드)

- 영화제작개요, 촬영계획서(프로덕션 플랜), 시놉시스 및 기획의도, 저작권(판권) 소유 확인서, 연출자·제작진 이력 및 자기소개서, 제작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영화업신고증 사본, (제작사 신청 시)연출자 계약서(연출자 본인 제작사인 경우 제외), (선택)투자계약서
- 전체 예산, 신청 예산, 조달확정금액 등은 사업신청서, 제작비 예산서와 동일해야 함

#### 3. 시놉시스+시나리오(장편/단편부문), 트리트먼트(다큐멘터리 부문)

- 장편/단편 부문 : 시놉시스+시나리오
- 제출형식 : PDF로만 제출, 기본서체, 11pt, 여백 20mm, 머리/꼬리말 10mm,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 **개인정보 절대 기재 불가 : 심사 시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 기재시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주의**
- A4 2장 내외의 시놉시스 + 수 장의 시나리오를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 요망
- 다큐멘터리 부문 : 트리트먼트
- 다큐멘터리의 경우 A4 30장 이내의 트리트먼트 제출(PDF)
- 다큐멘터리 작품의 세부 줄거리와 연출의도/전략 등을 상술하며 자료 조사 및 취재 내용 등을 추가하여 제출 가능하나 논문 자료 등은 요약 정리하여 트리트먼트 작성
- 제출형식 : PDF로만 제출, 기본서체, 11pt, 여백 20mm, 머리/꼬리말 10mm,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4. 제작비 예산 내역서 1부** (위원회 제공 양식 준수, 엑셀 형태로 업로드)

**5. 포트폴리오(온라인 스크리너)**

- 부문별 연출자 자격요건 확인 후 필수 제출
- 포트폴리오(온라인 스크리너) 제출방법
  - 온라인 스크리너는 'VIMEO' 혹은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업로드 후, 해당 링크(비밀번호 필수포함)를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업 접수 시 입력하여 제출(사용법 별도 안내)
  - 온라인 스크리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예: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공모용' 문구삽입) 표시 권장
  - 온라인 스크리너의 상태 불량으로 재생이 안 될 경우 심사 제외 가능

**6. 기타서류** (위원회 제공 양식)

- (공통) 성범죄 사실확인서
- (공통)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 (다큐멘터리 부문) 주요 출연자 촬영동의서(제작계획서상 기재된 주·조연 전원 포함)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

(1)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의 재원이 국고, 기금인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나, 지원금의 재원이 지자체, 민간단체 지원금인 경우 중복으로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음)
  - 결과보고서(중간보고서 및 월간 보고서 포함)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작품 혹은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등

(2)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제재 및 벌칙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9. 기타 의무사항

□ 통지의무 및 승인

- 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의 발생 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동 사업의 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하거나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동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 수행명령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제작환경 개선 의무

- 제작현장 성범죄 예방 의무 및 성평등 정책 기초자료 수집 관련 사항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는 대표신청인, 주요 참여자(제작자, 감독, 프로듀서, 작가, 제1주연 배우)의 성별을 보조사업 신청서 상(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사업의 경우 온라인 상 성별 선택) 기재 하여야 함.
    - ※ 해당 성별은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보조사업자(제작자, 감독, 촬영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 여부 및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 여부 등을 밝히는 '성범죄 사실확인서'(별첨양식 2)를 제출하여야 함.
    - ※ (별첨양식 2) 성범죄 사실확인서
  - 보조사업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착수 전에 참여자 전원[제작자, 감독, 촬영감독, 프로듀서, 제1주연 배우, 기업(단체)대표자 포함]이 제작 기간 중 성범죄·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성범죄·성희롱 예방서약서'(별첨양식 3) 및 '성범죄·성희롱 예방교육'(교육비는 위원회에서 지원)을 수강한 '이수확인서'(별첨양식 4)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별첨양식 3) 성범죄·성희롱 예방서약서

※ (별첨양식 4) 성범죄·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 영화진흥위원회가 요청하는 '참여여성비 통계자료'(실적/정산보고서 상 성비 통계 별도 기재 또는 별첨양식 5 활용)를 반드시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별첨양식 5) 참여여성비 통계자료

○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의무

- 보조사업자는 합법적으로 만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를 위반한 사실 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로자 건강권 및 안전 관리 의무

- 보조사업자는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 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함.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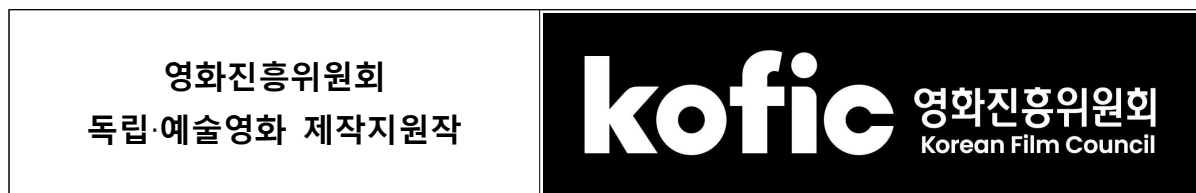
□ 작품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

○ 근로환경 조사자료 제출 의무

- 보조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을 근거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표준보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영화근로자 보수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대상작품이 영화화되어 개봉될 시 위원회의 지원작(아래 소정양식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상영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소정양식>



- 위원회는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득한 보조대상작품(또는 보조대상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관련한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보조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함.

## 10. 문의처

지원사업문의

(48058)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독립·예술영화팀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장편)	황치승	051-720-4772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단편)	권순선	051-720-4777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다큐)	김희영	051-720-4776

성평등 평가지수 문의

공정환경조성센터 담당자 051-720-4746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